

◎ 민소 실전/GS (B) 진도범위 (최평오) ◎



각자기본서 + 보충프린트
(3월전과 다른 문제)

▶ 답안지 양식의 18면 정도의 답안 해설

상대평가인 시험에서 다른 수험생보다 답안지를 더 충실히 적는 것이 점수획득에 유리합니다.
- (채점평에서도 답안지를 논거를 포함하여 판례나 검토의 논거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답안작성시 유의사항 ☺

- ① 실전G/S 출제문제는 주로 교수가 출제한 문제를 원칙으로 하여 이를 변형하거나 또는 중요판례가 나온 문제, 그리고 다른 사례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문제 중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A급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시험범위로 제시된 범위는 주 논점이 그 범위 안에 있다는 의미이고 시험범위 밖의 논점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범위는 매회 누적됨을 유의하시고, 실전 제8회 시험은 전범위의 종합시험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실전에서는 매회 전 범위라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매회 시험범위에 병합청구소송과 다수당사자소송, 그리고 상소와 재심에 관한 논점이 포함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③ 시험용 필기구는 검정색을 권장합니다. 또한 시험시간은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절대로 2시간 넘게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 답안작성시에 관련된 조문은 정확하게 인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⑤ 실전G/S에 대비한 공부방법은 매회 시험범위내의 내용을 자기가 공부한 기본서를 통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공부한 기본서로 진도범위를 다 공부한 후에 쟁점을 확인하는 의미로 사례집을 보는 것이 유용한 방법입니다.
- ⑥ 절대로 시험범위 내에서 사례집만을 공부하고 오는 수험생은 위험한 것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NO - PAIN, NO - GAIN !! BEYOND THE LIMIT !!

회 차	일 정	시험범위 및 주요확인사항
(이시윤저 기준)		
1회 ~(변론능력까지)		*신의칙(금반언-한계, 실효, 부당형성-최근판례유의)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절대적면제주의의 판례결론 주의, 최근판례유의) *국제재판관할권 *전심판여 및 기피사유와 기피신청의 효과 *특허권침해소송 *합의관할(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전속관할(특히심급관할)에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관할위반시 이송신청권 유무, 이송후 이송전의 소송행위가 이송후의 법원에서조차 유지되는지 여부 *재소전 당사자의 사망(최근판례유의)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와 임의적소송담당 *미성년자의 소송법상의 지위(과하판결에 대한 상소 및 관과하여 본안판결 나온 경우)
2회 ~(시효중단)		*대리권(대표권)소멸통지에 관한 논점 *파기환송소송대리권부활여부 *무권대리(쌍방대리금지위반의 효과,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요건심리와 선순위성(특히대위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최근판례 등 주의하여 읽기 - 시효중단만을 위한 확인의 소(전합판결)) *재판장의 소장심사(보정명령에 의한 경우에 보정의 효과발생시기 및 불응한 경우에 과하명령의 행사시기) *원고청구가 주장자제로 이유없는 경우 무변론 기각판결의 가부(최근판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회 ~(주후보완)		*처분권주의(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및 절차청구에 명도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간접적주장의 인정여부) *직권조사사항(피고가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인정한 경우) *지적의무(판례의 예를 많이 알아둘 것) *석명권-특히 적극적 석명가부 *이익권의 포기과 상실 여부 *준비서면부제출의 효과 *간접부인과 항변의 구별기준 및 구별실의 *소송상 형성권(특히 상계권)의 행사 *소송상 합의 *기일의 해태(쌍불취하, 자백간주 및 진술간주의 한계, *기간의 부존수(소송행위의 주후보완)
4회 ~(증거까지)		*공시송달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중요) *소송절차의 중단(사망한 경우에 당연승계이론인정여부,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의 문제점-다른 취지의 최근판례유의, 사망을 관과하고 판결이 나온 경우 판결의 효력여하, 수계신청법원) *재판상자백(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문서의 종류(공문서와 사문서 및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와 증거력-특히 2단의 주장의 의미 *문서제출명령 -특히 자기사용 문서(최근판례유의) *거부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 *당사자본인신문 *자유심증주의(*증거공통의 원칙 *변론전체의 취지 *증명방해의 효과) *증거조사의 필요성과 대상
5회 ~(소송의 종료 전부)		*소의취하(특히, 재소금지-대위소송과 재소금지, 선결관계와 재소금지 *소송요건결시 청구인낙의 가부 *재판상화해-특히, 다투는 법 *기관력의 작용(선결관계와 모순관계-조치) *변론종결후의 형성권(상계권,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 정기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말소기각확정후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가부(말소기각확정후 소유권확인판결받고 말소청구한 경우) * 상계항변과 기관력(최근판례주의) *변론종결후의승계인(계정물의 양도에서 승계인의 범위) *판결의 편취-특히 허위주소로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의 편취의 경우에 소송법상, 실제법상, 집행법상의 구제책(청구이익의 소)
6회 ~(집단소송까지)		*예비적 병합 *물건인도청구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소의변경-특히 항소심에서 소의 교편적변경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청구의 확장과 청구감축의 경우의 성질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사례의 한 논점으로) *예비적 반소 및 제3자반소에 관한 판례 주의 *반소의 요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에서 심급이익을 헤탈 우려가 없는 경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수정논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송형태(최근판례유의)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대위소송의 형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최근판례주의(예비적피고가 인낙할수 있는지 여부, 조정에 갈음한 결정시 이익없는 당사자는 분리확정되는지 여부) *신청당사자(심급제한부신청가부,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선정자의 지위(적격유지상실설, 그리고 인낙한 최근판례에 주의)
7회 (소송참가부터~끝)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대위소송중 다른 채권자의 참가형태(최근판례) 및 대표소송의 계속중 회사의 참가형태 *소송고지(최근판례) *권리주장참가에서 양립가능성의 의미-독립당사참가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판결의 확정시기 및 소송종료선언) *소송탈퇴(최근판례유의) *피고의 경정 및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승계참가(최근 전합판례 주의) *인수승계-인수결정후 인수원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조치 *상소기간준수여부(동일청사판례)-관할위반의 상소*상소이의-전부승소한 경우에도 상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 *부대항소(사례의 논점으로) *항소취하(사례의 논점으로) *판결판결의 기속력 *재심의 대상적격(특히 파기환송판결) *재심사유-특히 가별적 행위의 재심사유(유죄확정판결과와 관계; 합체설과 적법요건설 -재심의 보증성과 재심기간의 준수와 관련)
8회(전 범위)		